



제330회 임시회

2014. 6. 1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명칭과 조직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 청소년 상담·활동진흥·성문화 사업 등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수행 기반 마련

4. 주요내용

- 센터 조직 명칭 정비 및 신설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복지상담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활동진흥실’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 성문화센터’ 〈신설〉
 - ‘실장’ ⇒ ‘센터소장’
-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6조의2)
 - 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위원장 : 행정부지사)
 - 위촉직 위원의 임기 : 2년, 2회 연임 가능
 - 기능 : 종합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자문, 행·재정적 지원 등

- 원장, 센터소장 등 직원 복무기준 변경(안 제8조)
 - 원장 및 센터소장 채용과 종사자에 대한 복무기준 마련
 - 원 장 : ‘비상근’ 규정 신설
 - 센터소장 : 임기제한 없음 ⇒ 임기 3년, 연임가능
 - 팀장 이하 직원 : ‘정년기준’ 규정 신설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전부개정(‘12. 8. 2) 및 법령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기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조직구성, 명칭, 직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근거로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조직에 포함하는 등, 청소년 상담·활동진흥·성문화 사업의 연계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법리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여성가족부 지침(2012. 8)의 핵심내용은, 청소년 복지상담 및 청소년 활동 진흥 업무가 종합센터나 통합법인 기구의 하부 부서로서가 아니라, 대외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고유 명칭을 사용하고, 센터장의 직위를 확보토록 하며, 센터 인력이 종합센터의 회계·복무 등 총무 기능을 중복 수행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16개 광역시·도 중 우리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지침에 따라 센터 고유명칭, 센터장 직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참고자료 1.]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는 종합센터의 기능에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문화 체험관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기존 ‘복지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활동진흥실’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종합센터의 산하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센터에 청소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각 센터소장의 역할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6조의2에서는 종합센터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함.
- 안 제8조에서는 종합센터 원장의 고용형태를 ‘비상근’으로 명시하고, 각 센터소장의 임용방식과 임기(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를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비상근 원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음.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조직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안
조직 (제5조)	<pre> graph TD A[원장(상근)] --> B[복지상담실장] A --> C[활동진흥실장] </pre>	<pre> graph TD A[원장(비상근)] --> B[사무국[임의]] B --> C[상담복지센터(소장)] B --> D[활동진흥센터(소장)] B --> E[성문화센터(소장)] </pre>
직원 (제7조)	원장, <u>실장</u> , 팀장, 팀원, <u>행정원</u>	원장, <u>센터소장</u> , 팀장, 팀원
임용 (제7조)	• 원장: <u>상근</u> , 2년(1회 연임)	• 원장: <u>비상근</u> , 2년(1회 연임)
	<신 설> • 실장 이하 직원: 원장추천→도지사임용	• 센터장: 3년(연임), 원장추천→도지사임용 • 팀장 이하 직원: <u>여가부 지침 상 정년기준 준용</u> , 원장추천→도지사임용

-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 현실적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다음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요구됨.

첫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조직 및 기관장 명칭 혼란 문제

-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통합기구)와 하부기구인 3개 센터의 ‘센터’라는 동일 명칭의 중복 및 기관장 명칭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 초래 소지

※ 개정 조례안에 따른 센터 조직의 기구명칭 및 기관장 명칭

	기구 명칭	기관장 명칭
통합기구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 <u>센터</u>	원장
하부기구	• 청소년상담복지 <u>센터</u>	소장
	• 청소년활동진흥 <u>센터</u>	소장
	• 청소년성문화 <u>센터</u>	소장

- 본 개정안에서 제시된 종합센터 조직구성을 보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통합기구 산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3개 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센터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장의 명칭도, 통합기구의 경우 ‘원장’, 각 센터의 경우 ‘센터소장’으로 명기하여, 조직명과 기관장의 명칭에 있어 도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우리 도처럼 통합기구 형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묶어서 운영 중인 타지역(5개지역) 사례를 보면, 통합기구의 경우 ‘청소년종합지원본부(경남)’, ‘청소년진흥원 (충남, 경북)’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하부 센터와의 명칭상 혼란을 불식시키고 있으며,
- 하부 센터 기관장의 명칭도 ‘2014년도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센터장’이란 용어를 사용토록 제안하고 있음. 따라서, 각 기구의 명칭 및 기관장 명칭에 대해서는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명칭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함.

둘째, 청주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직영 전환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센터 산하기구'로 둔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

- 안 제5조제1항에서 종합센터 조직 내에 기존의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진흥 업무 외에 청소년 성교육 및 성문화 체험을 담당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두도록 규정하였음.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를 근거로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충북에 2개소(청주, 충주)가 운영 중임. 청주소재 센터의 경우 2013년까지 민간위탁(수탁기관 :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방식으로 운영해오다, 2014년 직영으로 전환하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산하기구로 둬. 그러나, 충주시가 설립한 충주소재 센터의 경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재)단촌 청소년 활동 개발원'에서 위탁운영 중임.
-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충주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민간위탁 형태로 유지하면서, 청주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산하로 두게 된 사유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함.

셋째, 원장 고용형태 변경(상근→비상근) 이유에 대한 설명필요

- 안 제8조제1항에서 원장의 고용형태를 현행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였음.
- 원장의 고용형태를 현행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할 경우, 원장이 무보수(활동비 지원함) 명예직으로 존치됨. 또한, 안 제6조제1항에는 “원장은 종합센터를 대표하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센터소장과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상징적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형식만 종합센터로의 통합체제이지, 사실상 세 개의 센터가 독립적이고 통제받지 않는 운영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충북의 경우,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직영 통합체제로 청소년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과거 비상근 원장의 역할 부재로 인해 무늬만 통합이고, 별개의 조직처럼 운영되어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서 민선5기 들어와 새로운 시도로 상근원장 형태로 현 조직 운영의 변모를 시도하였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원장의 고용형태를 ‘비상근’으로 재변경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함.

넷째, 사무국 설치를 임의조항으로 신설한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

- 안 제5조제3항에서 종합센터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사무국은 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종합센터 내 3개 센터 업무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임. 특히 본 개정안을 통해 원장의 고용형태가 현행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되면서, 원장의 직무 몰입도 약화에 대한 보정 측면에서 사무국을 설치의 취지에는 공감함.
- 그러나, 본 개정안에는 사무국이 “~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의 조직규모, 직원,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사무국 설치관련 비용이 5개년(‘14~’ 18) 추계에 빠져있어, 사무국 설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듦. 또한, 과연 명예직 원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구성과 예산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 시행규칙에 답을 사무국의 조직규모, 직원, 기능 등에 대한 세부 내용, 그리고 비용추계에 사무국 설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1.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활동진흥센터 운영현황
2. 2014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 주요내용

1.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활동진흥센터 운영현황

지역	센터명칭	운영주체명	운영 형태	기관장 명칭	법령에 따른 명칭사용여부 (○, ×)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육성회	위탁	소장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연맹		소장	○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부산연맹	위탁	소장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소장	○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위탁	소장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가천미추홀봉사단		소장	○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YWCA	위탁	소장	○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홍사단		소장	○
대전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독교연합봉사회	위탁	소장	○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전광역시불교청소년연합회		소장	○
울산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YWCA	위탁	소장	○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소장	○
경기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건청소년회	위탁	소장	○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소장	○
강원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살레시오회	위탁	소장	○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소장	○
전북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동청소년회	위탁	소장	○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소장	○
제주	제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지문화재단	위탁	소장	○
	제주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성지문화재단		소장	○
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지자체설립 재단법인	대표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충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지자체설립 재단법인	원장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전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지자체설립 재단법인	원장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경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 지원본부	지자체설립 재단법인	사무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처장	○
경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진흥원	지자체설립 재단법인	원장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충북	복지상담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직영	원장	×
	활동진흥실				×

2. 2014년도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 주요내용

1 목 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 진흥
- 운영목표
 - 청소년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역량 개발
 - 청소년들의 활동 기반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활동 참여 활성화
 - 지역, 중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전국적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2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도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음

3 '14년 예산(국비)

- 3,033,000천원 보조(국비 30%, 지방비 70%)
 - 시·도별 184,500천원 보조(16개 시·도 동일예산 및 인력 10명 이상 적용)
 - ※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81,000천원 보조, 인력 4명 이상 적용

4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독립성 확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명칭을 사용하여 독립기관 형태로 운영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통합 법인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명칭 및 센터장 직위 확보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관을 통합 법인이 위탁 받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여 반드시 센터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부 공문 발송 시 반드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유 명칭 사용
- 센터 인력 기준인 10명 이상이 청소년 활동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
 - 타 기관 겸직, 법인 업무 등 타 업무 중복 수행 절대 금지
- 지자체 고유사업 또는 제안으로 별도 위탁(수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비 별도 편성
 - 보조금(매칭되는 지방비 포함)을 타 기능(부서)의 예산으로 전용(활용) 불가

5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직 및 인력

○ 운영 조직도



※ 배치지도사 : 2014년 제외

※ 팀 명칭 및 구성은 시·도 여건에 따라 조정

○ 운영 정원

- 직원은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상근)
- 10명 이상 확보[센터장(1), 팀장(2~3), 팀원(6이상)]

※ 센터장은 상근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와 사전 협의 후 비 상근으로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상근 사무국장을 두어야 함

※ 세종센터는 4명 이상 확보

- 시·도의 여건(예산, 청소년인구, 지자체위탁사업 등)에 따라 센터의 정원 확대 조치

6

인사 및 보수 관리(규정)

가. 인사관리

□ 직원의 선발

- 시기 : 직원의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 선발방법
 -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나이 제한은 가급적 삭제
 -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도(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이 가능함
 - 직원의 자격기준 : 【붙임 2】 참조
 - 직원 채용의 객관,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자를 중심으로 적정 인원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 시·도는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 승인
 - 센터의 장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성범죄경력조치를 실시
 - ※ 직원채용 시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치 결과 작성 비치

□ 직원 정년 : 만 60세

□ 직원 신분보장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음
- 위탁단체 변경 시 모든 직원의 고용승계